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등의 제공 및 관련 수수료 무료화〉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7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4. 6. 28.
3. 회 부 일: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9조의3).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결서 등 공개 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열람 및 복사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u><신설></u>	<u>⑥</u> 제5항----- ----- ----.
	<u>⑦</u>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⑥ (생략)	<u>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u>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
--------	--

2. 개정안의 입법취지¹⁾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²⁾ 및 대법원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3항³⁾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서 공개의 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열람 및 복사 시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 또는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1) 김휘옥·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p.343.~344.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헌법 제109조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재판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재판공개원칙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판결문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⁵⁾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결서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 재판공개라는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은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의 실질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됨.

3. 조문별 검토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김주석,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2023., pp9.~11.

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 공개(안 제59조의3제4항)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2항⁶⁾에 따르면,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전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대법원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판결서 등록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방식에 대해 규정⁷⁾하고 있음.

<법원의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조치 절차>

판결서 데이터 접수 → 1차 비실명 편집(사업자 수행) → 2차 비실명 편집 확인(사업자 수행) → 품질검수(사업자 수행) → 검사(법원관리자) → PDF파일로 변환 → PDF변환 검증(법원관리자)

자료: 법원행정처

개정안에 따를 경우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비실명조치를 마친 후 판결서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는 실무적으로 비실명조치를 거쳐 판결서가 최종 공개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평균 33일(비실명조치 31일 + 최종검수 및 등록 2일)⁸⁾ 정도가 소요된다는 입장임.

6)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형사판결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서 공개의 적절한 시기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업무량 및 법원의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판결서 제공(안 제 59조의3제4항)

개정안은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 12. 4. 대법원 규칙 제2809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⁹⁾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는 임의어 검색을 통한 열람 및 복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한 형사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상황임.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결서를 공

8)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비실명화 완료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법원행정처는·비실명화 작업 완료에 2023년 1월에는 평균 19일이 소요되었으나,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 2023년 8월에는 약 41일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9)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09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판결서에 대한 손쉬운 접근 허용은 소송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형사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모방범죄의 확대가능성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바 있음.¹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의 제한사유¹¹⁾가 없는 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신청¹²⁾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서 공개 전 소송관계인의 확인 절차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¹³⁾ 현행 제도하에서 개정안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10) “판결서 공개 관련 논의사항 정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18., pp 6..

11)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 (생 략)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6p, <법원의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조치 절차> 참고

다. 판결서 열람 또는 복사 시 수수료 무료(안 제59조의3제7항 신설)

국민이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임.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판결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 법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법원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지 않으나,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법원의 역무 등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판결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복사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경우 등 판결서 열람·복사 방식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안 제59조의3제4항의 경우 특정 판결 선고기일에 수십 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수십 명인 경우, 판결서등의 길이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9조의3제7항의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